

●여성가족부 고시 제2017-55호

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한 청소년유해물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2월 11일

여성가족부장관

1. 청소년유해물건 개정(안) 목록 : 아래 목록표와 같음

『개정(안)고시목록』

청소년유해물건 목록표

일련 번호	물건의 종류	물건의 명칭	주요소재	제조사 / 수입사	심 의 · 결정기관	결정연월일	결정사유	고시의 효력발생일
2017-4	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	담배 형태의 흡입제류 ※ 제품 예시(비타민 흡입제류, 흡연욕구 저하제류 등)		제조·판매· 수입·유통사	청소년 보호위원회	2017-11-29	유해약물 이용습관 조장 등	2017-12-11